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1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4.

발 의 자:전용기·박해철·박지원

송옥주 · 민병덕 · 정준호

이용선 • 진성준 • 민형배

허 영·안도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휴가는 민간,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,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·공휴일 등 휴일은 그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.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.

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,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

(안 제18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가 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1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휴가의 휴일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되는 휴가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휴가 등의 보장) ①・②) 제18조(휴가 등의 보장) ①·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
	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
	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연가
	및 정기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
	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
	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.